

법무부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북한주민 재산 처분 및 반출 신청이 북한주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 불허통보하도록 규정하나, 현행 동법 시행규칙은 이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각종 불허통보를 신설 서식에 의하도록 하여, 법무부장관의 적정한 감독권한 행사를 추구하는 동시에, 권한 행사를 정형화·통일화하여 실무자의 행정절차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안 제4조의2),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안 제5조 제3항),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불허통보서 및 변경 불허통보서(안 제6조 제4항)를 각 신설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에 따른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문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에 대한 불허 통보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불허통보서
2. 법 제19조제1항 후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 통보 :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변경 불허통보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 재산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하는 조치의 내용

이유	기한
----	----

사전통지	☐ 하였음
	☐ 하지 않았음 (사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불허하는 재산 처분 등 행위	허가 신청 접수일자
	허가 대상 재산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부동산 거래 상대방 및 주요내용

불허 이유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허가 신청한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을 위와 같이 불허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불허통보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불허하는 직접 사용·관리 행위	허가 신청 접수일자
	직접 사용·관리 목적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
	포괄적 허가신청 기간, 내용

불허 이유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허가 신청한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를 위와 같이 불허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변경 불허통보서

재산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북한주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불허하는 직접 사용·관리 변경	변경허가 신청 접수일자
	기존 직접 사용·관리 허가 일자 및 내용
	변경하려는 내용

변경 불허 이유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허가 신청한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변경을 위와 같이 불허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 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u>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에 따른다.</u>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 · 관리 허가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 · 관리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영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u>1. 법 제19조제1항 전문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에 대한 불허 통보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 · 관리 불허통보서</u>

2. 법 제19조제1항 후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
통보 :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변
경 불허통보서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법무과	
연 락 처	02-2110-3225